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10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 박상혁 • 박용갑 • 한준호

한민수 · 이광희 · 이연희

박희승 • 박홍근 • 이병진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만 대를 초 과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탄소중립 ·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확산될 전망임.

그런데 현행법 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초 무료 주차시간 운영 여부가 상이하게 나타나 지역별 형평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법률 제 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를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를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 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수 등) ①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 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 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 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 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 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 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 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 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 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 감면한다. 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생 략)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 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u>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감면한다.</u>

③ (생 략)

<u>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u>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
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현행과 같음)